

노부모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

당사는 당첨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 자격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.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- ※ 부적격 확정 당첨자는 검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■ 서류접수 기간 : 2022.09.21(수) ~ 2022.09.25(일) / 시간 - 10:00 ~ 17:00까지

■ 서류접수 장소 : 거제 한신더휴 견본주택(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202-1)

■ 구비서류

구분	발급대상	제출서류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서류	청약자	신분증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
		주민등록표등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포함' 발급
		주민등록표초본	·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포함' 발급
		가족관계증명서	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	출입국사실증명원	·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 설정하여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, 기록대조일(출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.08.22)
추가서류 (해당자)	청약자	혼인관계증명서	·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	복무확인서	· 해당 주택건설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※ 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	가족관계증명서	·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'상세'로 발급
	직계존속	주민등록표초본	·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포함'로 발급)
		가족관계증명서	·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	출입국사실증명원	· 국토교통부「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」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		주민등록표초본	·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포함'로 발급)
	직계비속	혼인관계증명서	· 만 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	출입국사실증명원	· 국토교통부「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」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- 만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만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주민등록표초본		·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포함'로 발급)	
제3자 대리인 신청인	청약자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위임장	· '본인'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 · 청약자(본인)의 인감도장 날인(견본주택에 비치)
	대리인	신분증, 도장(서명)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해당주택	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·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족대장등본 포함) ·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	당첨사실 소명자료	· '소형·저가주택 등' 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·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인	대리인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위임장	· '본인'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 · 청약자(본인)의 인감도장 날인(견본주택에 비치)
		신분증, 도장(서명)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해당주택	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·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족대장등본 포함) ·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	당첨사실 소명자료	· '소형·저가주택 등' 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·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■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

구분	발급대상	제출서류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단신부임	청약자	해외체류관련 증빙 서류	·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·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·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	배우자 포함 세대원	· 배우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청약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 설정하여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, 기록대조일(출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.08.22)
	청약자 및 세대원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·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-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2.08.22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**주민등록표등본**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'전체포함' 및 '상세' 로 발급

※ 정당한 당첨자(적격여부)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